# 45 도금공정 세척 작업자에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성별	남성	나이	23세	직종	세척직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 1 개 요

근로자 ○○○○는 외국인으로 2015년 6월 25일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도금반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7월 20일부터 피부발진으로 인근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2015년 8월 9일 대학병원에서 수포성 다형홍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 드레스증후군(선행사인: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2015년 8월 13일 사망하였다. 유족은 유산동 포망 세척시 트리클로로에틸렌(TCE)에 노출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여 2015년 10월 28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 2 작업환경

근로자는 2015년 6월 25일에 입사하여 2015년 7월 28일까지 약 1개월간 도금공 정에서 근무하였다. 근로자가 근무한 도금공정은 작업장 3층에 위치하고 있다. 도금은 직접 하지 않았고 피도금물을 TCE 초음파 세척조에 담갔다가 꺼내는 세척작업과 작업 대에서 제품 표면을 물로 닦는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TCE 세척은 수동작업으로 냉각코일이 설치된 초음파 세척기에 부품을 담갔다가 꺼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근무시간은 8시 30분~17시 30분이고 연장근무시간은 18시~21시로 일 11시간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2015년 6월 25일 입사한 이후 약 1개월동안 TCE 세척작업을 하면서 TCE에 노출되었고 작업환경측정결과에 근거할 때 노출수준은 2.9569~22.6951 ppm으로 추정이 된다.

# 3 해부학적 분류

- 피부질환

### 4 유해인자

- 화학적인자

##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응급실 내원 약 1개월 전부터 피부 가려움, 발열, 몸살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개인의원에서 약물치료와 주사제를 처방받았으나 질환이 호전되지 않았다. 내원일주일 전부터 전신의 부종을 동반한 발진, 박탈성 피부염 등 증상이 악화되어 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전신의 박탈성 피부염과 인후통 등을 호소하였으며 체온39.1℃ 이외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백혈구, 간수치, 혈중 호산구의 증가 소견이었으며, 내원 전 약 복용한 과거력 있어 임상적으로 드레스증후군으로 추정 진단되어스테로이드 치료 및 면역억제제 치료 시행하였으나, 피부증상 및 발열 등 전신 증상 악화되어 입원 4일 째, 중환자실로 옮겨 처치하던 중 갑작스런 심정지 발생하였고, 소생실패하여 사망하였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2015년에 입사하여 1개월간 도금공정에서 TCE 세척작업을 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있는 작업환경요인으로는 TCE 등이 있다. 근로자는 약 1개월간 도금공정에서 TCE 세척작업을 하는 동안 TCE에 노출되었을 것이며, 측정 결과에 근거할때 TCE의 노출수준은 2.9569~22.6951 ppm 으로 추정하며 피부노출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드레스증후군을 일으킬만한 약물투여는 없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스티븐존슨증후군은 TCE 과민성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끝.